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 백중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7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6.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범위, 자료 제공 요청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2조의2(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현황 관리</u> <u>2.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u>

	<u>현황 관리</u> <u>3.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및 관리·평가</u> <u>4. 그 밖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2.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298억 8,800만원¹⁾임.

< 최근 3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4년	47,249	-	47,249	47,248	-	1
2025년	43,355	30,709	30,709	28,303	2,378	28
2026년	29,880	-	29,880	집행중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²⁾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 ❶ 대상자 관리 : 신청자 정보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
- ❷ 이용자 지원 : 심리상담 이용 전 온라인 자가진단 제공, 상담 내역 정보 조회 등
- ❸ 서비스 이력 관리 : 서비스계획서 및 상담 이용기록, 심리상담 전·후 검사결과 등 등록
- ❹ 제공기관·인력 관리 : 제공기관·인력 정보 연계를 통한 제공기관·인력 현황 관리
- ❺ 성과 평가 및 통계 : 마음투자 특화 평가지표로 서비스 성과 평가 및 통계 관리
- ❻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 필수적인 복지정보와 사용자 인증 등을 위한 시스템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1) 세부내역은 심리상담 바우처 271억 7,300만원,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26억 1,000만원 및 사업운영관리비 9,700만원임.

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및 인력),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2025. 12.)[자료: 보건복지부]

면서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범위, 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이었던 자료 수집 및 기관 간 정보 요청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현행법에는 전체 정신건강증진사업등³⁾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특정 사업명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향후 사업이 개편·확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마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 ⑩ (생략)

□ 또한, 현행법 제71조 및 제85조제6호4)에서 이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발표 금지 의무를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2조의2제4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⁵⁾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통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이고, 향후 양질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배치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5) 한지아의원안(제2209103호), 장종태의원안(제2218715호)

문 의 처
02)6788-5498